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72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0일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에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의 예외로서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더하여 의무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군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u>임기제공무원</u> 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3. ----- -----. ----- ----- ----- ----- <u>임기제공무원</u> ,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한다)-----

4.·5.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 4.·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별정 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군인 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됨. 그리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을 말하며 이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임.

군인의 경우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공무원 체계(국가공무원법 제2조) >

구 분		내 역
경력직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은 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실업의 위험이 적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적은 것과 직역연금의 가입대상자로서 직역연금에 의한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에 기인함. 다만,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의 정도가 약한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군인의 경우 60세가 정년인 일반공무원¹⁾과 달리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등을 적용받아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인은 별도로 계급별 연령정년, 근속정년과 계급정년을 두고 있음. 예컨대 소령의 경우 50세가 연령정년이 고, 24년 근무한 경우 근속정년에 해당하여 전역(轉役)하여야 함²⁾.

< 군인사법상 연령정년(제8조제1항제1호) >

구분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연령	종신	63세	61세	59세	58세	56세	53세	50세	43세	55세	55세	53세	45세	40세

< 군인사법상 근속정년(제8조제1항제2호) >

구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기간	35년	32년	24년	15년	32년

< 군인사법상 계급정년(제8조제1항제3호) >

구분	중장	소장	준장
기간	4년	6년	6년

이에 개정안은 진급누락,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복무기간 20년 미만으로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군인사법」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수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을 통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재취업 전까지 생활안정과 구직 촉진을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및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³⁾,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지원요건, 지원목적 등이 유사함.

2025년 기준 장기복무 제대군인(복무기간 10년 이상)에 대하여는 월 81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복무기간 5년~9년)에 대하여는 월 58만원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되는데⁴⁾, 2025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인 월 198만원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2024년보다는 인상된 수치임. 그리고 전직지원금의 지원목적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의 목적과 유사함.

< 전직지원금 월지급액과 구직급여 상한액 비교 >

(단위: 천원)

구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전직 지원금 월지급액	중기복무자	250	250	250	250	250	500	500	550	580
	장기복무자	500	500	500	500	500	700	700	770	810
구직 급여	월 상한액	1,500	1,80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자료: 국가보훈부

둘째,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제도로, 군인과 유사하게 계급정년을 적용받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군인에게만 별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셋째, 군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이 가입을 하게 되어 보험재정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81만원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8만원

고용노동부는 군인이 이미 직역연금의 가입대상자로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아닌 직역연금 체계 내 보호방안 강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전직지원금 제도와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군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와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과 기금 재정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